

「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에 기여.
-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확대 및 특별정책고문 위촉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시정 자문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위원장 등 위촉 방법 변경(안 제2조)
 - 구성인원 : (현행) 20명 이내 → (개정) 100명 이내
 - 위 원 장 : (현행) 호선 → (개정) 시장이 지명
- 사무의 위탁 조항 정비(안 제4조의2)
 - 현행 : 위원회에 위탁
 - 개정 : 지역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
- 특별정책고문 조항 신설(안 제8조)
 - 10명 이내 위촉(필요 시)
- 특별정책고문 위촉에 따른 수당 조항 정비(안 제12조)
- 인용하고 있는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2조, 제14조)
-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다양한 정책사업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실효적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개발은 필요한 사항이며 본 조례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집행부에서는 <특별정책고문>이 형식적인 위촉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.